

이천시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05. 5. 24(화)
산업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5년 5월 10일 이천시장 제출
- 나. 회 부 일 자 : 20054년 5월 10일
- 다. 상 정 일 자 : 제78회 이천시의회(임시회)
제1차(2005. 5. 23) 산업건설위원회 상정
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(제안설명자 : 산업복지국장 윤희문)

가. 제안이유

- 등록 장애인 수의 증가와 장애인복지욕구의 확대로 이천시 장애인복지관련사업의 기획·조사·실시 등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이천시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위원회의 기능은 이천시 장애인복지관련사업의 기획·조사·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심의(안 제2조)
-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, 위촉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함 (안 제3조)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: 박규하)

-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하여 이천시 장애인 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·조사·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제안된 조례로써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 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일부수정의결(만장일치)

7. 수정안의 요지

가. 수정일자 및 제안자 : 2005. 05. 23. 산업건설위원회 이광희 위원장의 6인

나. 수정이유 :

-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증가추세에 있는 장애인 관련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는 하나,
-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일부 항목을 추가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조치 후 수정 의결

다. 수정주요골자

- 위원회 구성 내용 보충(안 제3조 제2항)
 - 3호를 이천시의회의원 2명으로 하고, 3호를 4호로 함.

8. 기타사항 : 없음

- ※ 첨부: 1. 이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- 2. 수정안 조문 대비표